

급경사지 안전점검 위탁 사유서

□ 개요

- 도시 개발 등의 인위적인 훼손으로 급경사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급경사지법 제5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

* 부산 사하구 주택 매몰(' 19/4명 사망), 경기 평택시 공장 매몰(' 20/3명 사망), 경북 영주시 주택 매몰(' 23.6.30./영아 1명 사망), 세종 비탈면 붕괴(' 23.7.15./1명 사망) 등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관리기관은 같은법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위탁근거 및 필요성

○ 법적 근거

- 급경사지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위탁 근거(※ 붙임 1 참조)

「급경사지법」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4. 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에 관한 도서(圖書)등의 작성·보급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에 따른 위탁계약(수의계약)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8.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급경사지 안전점검의 신뢰성 및 전문성 필요

-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조사 필요

* 급경사지 안전점검은 붕괴가 발생하기 전(해빙기 및 우기대비) 점검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신뢰성 있는 안전점검이 필요함



<NDMS 안점점검 결과 ‘안전’ → 붕괴발생 사례>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는 「급경사지법」제3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설립 허가 받은 국내 유일의 급경사지 전문기관임(※ 붙임 2, 3 참조)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는 '21~'24년 급경사지 안전점검 관련 업무를 다수 수행 (※ 붙임 4 참조)

○ 사업 추진의 신속성 필요

-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은 급경사지 특성상 붕괴가 발생하기 전에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 및 대비하는 것으로 위탁계약(수의계약)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

□ 위탁 대상

- 기관명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 디펠리체 1002호
- 사업자등록번호 : 505-82-12007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급경사지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알림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시행일 '24.8.14.),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24.7.31.)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급경사지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급경사지 실태조사 시행 근거 신설 (법 제5조의2, 영 제2조의3)

-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파악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안부 및 시·도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새로 확인된 급경사지는 시·군·구 및 관리기관이 관리
-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급경사지의 위치·규모, 비탈면유형, 붕괴위험요인 등을 조사
-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간접조사, 원격탐사 병행 가능

나. 상시계측관리 대상 확대 (법 제8조)

- 급경사지 붕괴징후 감지를 통한 재해예방을 위해 모든 급경사지에 상시계측관리 가능
 - (중전) 붕괴위험지역 → (개정) 전체 급경사지
- 상시계측관리 업무는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에 등록된 계측업자가 대행
 -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에 계측업자로 등록된 업체만 상시계측관리 업무 수행 가능

다. 급경사지 관리대상 확대 (영 제2조)

- 급경사지 붕괴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등 건축물과 최단거리가 3미터 이내인 인공비탈면의 경우 높이 기준을 3미터 이상으로 함
 - (중전) 5미터 이상 → (개정) 5미터 이상(주택 등 건축물과 최단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 3미터 이상)

라. 행안부, 지자체, 관리기관의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위탁 근거 신설 (법 제33조, 영 제15조의6 신설)

- (위탁가능업무) 안전점검, 실태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붕괴위험지역 정비 기준 관련 도서 작성·보급, 급경사지를 조성한 공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마. 시·군·구의 긴급안전조치 이행명령 내용 공개 (법 제17조)

- 급경사지 주변에 안전조치명령*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지자체 공보, 홈페이지 등에 내용 게재
 -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조치

바. 상시계측관리 업무담당자의 계속전문인력 실무교육 이수 (법 제30조)

- 관리기관 상시계측관리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재해예방을 위해 계속전문인력 실무교육 이수 의무화
- 부칙 제2조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25.2.14.)에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함

사.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 (규칙 제2조)

-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고시해야 할 항목에 지형도면 추가
 - (중전)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 → **(개정) 관보에 고시**
- 부칙 제2조에 따라 기 고시한 붕괴위험지역의 경우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 ('24.10.31.)에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함

붙임 급경사지 관련 개정 법령 각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산지방재과장), 부산광역시(자연재난과장), 대구광역시(자연재난과장), 대전광역시(자연재난과장), 인천광역시(자연재난과장), 광주광역시(자연재난과장), 울산광역시(자연재난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자연재난과장), 경기도지사(북부안전특별점검단), 강원특별자치도지사(자연재난과장), 충청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충청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전라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경상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경상북도지사(재난관리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연재난과장), 남부지방산림청장, 동부지방산림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서부지방산림청장, 중부지방산림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서울교통공사사장, 부산교통공사사장, 대구교통공사사장, 대전교통공사사장, 인천교통공사사장, 광주교통공사사장, 경기교통공사사장, 세종도시기동공사사장

주무관	이성건	시설사무관	정순환	재난점검과 과	전결 2024. 8. 9.
협조자	주무관	박선희	주무관	장	박정호
시행	재난점검과-3535			접수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5157	팩스번호	044-205-8935	/ kk100y2k@mail.go.kr	/ 비공개(5)

제 2020-15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2.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53, 504호
3. 대표자
 - 성 명 : 류지협
 - 생년월일 : 1967년 4월 17일
 -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360, 339동 1502호
4. 사업 내용
 - 급경사지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급
 -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 급경사지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과 기술의 개발
 - 민간 주도의 급경사지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 급경사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 급경사지 분야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 그 밖에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허가조건 : <별지> 참고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2020년 7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업무 활용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주요 업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계측 및 점검 등 급경사지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명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나. 근 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2

※ 협조사항 :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주요 업무 전파 조치

- 붙임 1.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업무 활용 요청(공문) 1부.
2.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업무 안내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장), 서울특별시(산지방재과장), 부산광역시(재난대응과장), 인천광역시(자연재난과장), 광주광역시(자연재난과장), 대구광역시(자연재난과장), 울산광역시(재난관리과장), 대전광역시(재난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재난관리과장), 경기도지사(북부재난안전과장), 강원도지사(재난복구과장), 충청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충청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전라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전라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경상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경상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재난대응과장), 북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 동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 남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 중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 서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 한국도지주역공사 사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인천교통공사 사장,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부산교통공사사장, 서울교통공사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주무관	이동희	기술서기관	대결 2020. 12. 2	과장	전영
협조사			차상화		
시행	재난경감과-4807			접수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533호 재난경감과(1나성동)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5157	팩스번호	044-205-8931	/	flyaway777@korea.kr / 대한민국 공개

붙임 4

급경사지 안전점검 사업 실적

□ 급경사지 안전점검(124건 이상)

[2024.08.20. 기준]

연번	과업명
1	2023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2	2023년 지방도 급경사지 해빙기 안전점검용역
3	2023년 울진군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2차)
4	2023년 광양시 급경사지 해빙기 안전점검 용역
5	2023년 제천시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6	2023년 광주시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7	2023년 영양군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8	2023년 산지태양광발전시설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9	2023년 울진군 산불피해지역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10	2023년 청원구 관내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11	2023년 광주시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2차)
12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13	2023년 안동시 우기대비 도로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14	제3종시설물(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15	2023년 울진군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16	2023년 하반기 급경사지(영동권역) 안전점검 용역
17	2023년 하반기 급경사지(안동권역) 안전점검 용역
18	2023년 하반기 급경사지(울진, 영양권역) 안전점검 용역
19	2023년 하반기 상당구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20	2023년 영양군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21	2023년 충주시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22	보령시 급경사지 안전점검 의뢰
23	강동구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24	파천시 급경사지 안전점검 의뢰
25	2023년 동부사무소 관할 급경사지 안전점검 의뢰
26	안산시 급경사지 안전점검 의뢰
27	2023년 상반기(해빙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변경의뢰
28	광양시 산지태양광 인접 급경사지 안전점검
29	보성군 급경사지 안전점검
30	보령시 급경사지 안전점검 의뢰
31	급경사지(주약동 산4-1) 안전 관련 자문 의뢰
32	2023년 우기 동부사무소 관할 급경사지 안전점검 의뢰
33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의뢰
34	2023년 상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의뢰
35	대청면 사고위험 우려 지역 점검 현장 입회 요청
36	2023년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의뢰
37	파주시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의뢰
38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급경사지 안전점검 의뢰
39	급경사지 점검 의뢰
40	2023년 상반기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의뢰
41	급경사지 안전점검 의뢰
42	2024년 상반기 상당구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43	2024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44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및 해빙기 안전점검 용역
45	2024년 해빙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전점검용역 시행
46	2024년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1구간)
47	2024년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2구간)

48	2024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49	2024년 거창군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50	2024년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51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기안전점검 용역
52	2024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전수조사용역
53	2024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54	2024년 봉화군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55	2024년 영양군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56	2024년 과주시 해빙기.우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57	2024년괴산군급경사지안전점검용역
58	2024년 서천군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59	2024년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60	2024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61	2024년 단양군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62	2024년 상반기 급경사지 정기점검 용역
63	2024년 광주시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64	2024년 영주시 건설과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65	2024년 광양시 급경사지 해빙기 안전점검 용역
66	충주시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24년 해빙기)
67	2024년 울진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북부권역)
68	2024년 울진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남부권역)
69	2024년 진안군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70	2024년 무주군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71	2024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의뢰
72	2024년 상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의뢰
73	보성군 해빙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전점검 의뢰
74	2024년 상반기(해빙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의뢰
75	동부사무소 관할 급경사지 안전점검 의뢰
76	동부사무소 관할 급경사지 안전점검 추가 의뢰
77	2024년 상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점검결과 제출 요청
78	급경사지 안전점검 의뢰
79	급경사지 안전점검 의뢰(태양광 인근)
80	계룡시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의뢰
81	2024년 제천시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82	2024년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83	2024년 장흥군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84	2024년 상당구 관내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85	2024년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86	2024년 우기철 급경사지 정기점검용역
87	2024년도 단양군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88	2024년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89	2024년 옥천군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90	2024년괴산군우기대비급경사지안전점검용역
91	2024년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 점검 용역
92	2024년 상반기 거창군 우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93	울진군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북부)
94	2024년 울진군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95	2024년 하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96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의뢰
.....	
124	충주시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24년 우기대비)